

시정연설전문

(번역)

서독수상 '비리·브란트'

1969. 11

「시정연설」 전문

—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자！」 「빌리·브란트」 연방수상은 선출된지 1주일 뒤인 지난 화요일 제6차 연방의회에서 그의 시정연설을 행하였다.

다음은 그의 연설전문을 공개한 것이다. —

I. 우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과 독일국민의 단결을 유지하고 평화를 보존하며 구주의 평화로운 질서를 위해 협력할 것과 그리고 우리국민의 자유권 복지를 향상시키며,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앞날의 세계에서 그 지위가 인정되고 보장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정부의 정책은 곧 혁신과 일관성이라는 두 기호로서 부각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연방정부, 각주 그리고 지방 및 우리국민의 각계에서 달성해 놓은 업적에 대해서 중의를 포함합니다.

나는 수 많은 공로자들의 대표자로서 「콘라드·아베나워」 · 「테어돌·호이스」 그리고 「쿨트·슈막허」 등의 이름을 열거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분들과 더불어 독일연방공화국은 몇몇이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행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아무도 지난 20년간 이루어 놓은 업적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기본질서에 대한 성실성은 지난 9월 28일에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의 투쟁대상이 되고 있는 극단주의를 한결같이 거부한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회민주주의는 발족 20년만에 그 변화를 이겨내는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동시에 그 시련을 극복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외국에 까지 알려졌고 우리국가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거의 백년동안이나 독일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고 그것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보존하였으며, 큰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그것을 이루어 놓은 우리의 현 정치사회로 볼 때 의회민주주의 형태를 엄격히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실문제에서는 대립되더라도 국가적으로는 협력하면서 정부와 야당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찬란한 미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공동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입법기관과의 충실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로 연방정부는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에 대해서 그러한 호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국민은 타국민과 마찬가지로 대내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우리는 이 나라에 연대의식을 일깨울 정도의 질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민주주의 질서는 반대파에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인내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비상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상황을 공개할 것이며 정보를 찾는 비판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의회를 방청하여 국민의 대표자들과의 꾸준한 접촉을 유지하고, 정부의 시청단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후에 자라난 젊은 세대를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세대의 담보에 얽매어 있지도 않고 또 얽매일 수도 없는 우리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세대들도 그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거권 연령을 21세로부터 18세로, 피선거권연령을 25세로부터 21세로 인하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년의 한계도 재검토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친 공동참여제도 및 연대책임제도 등은 장차 이 나라의 가장 커다란 사회적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공동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회구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감수하는 모든 비판적인 동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지가 교회에 있거나 예술계나 과학·경제계 또는 사회의 어떤 분야에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직

극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계관적·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이웃에 대한 연대적 봉사도 나타나는 도덕적인 감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히 노인·병자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불구자들이 그들의 고통속에서 물질적인 원조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연대감정을 요구할 때 우리는 공동의 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봉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기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에서조차 종교·사회단체의 활동에 정치적 거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 사회적 봉사기관과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일치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나라의 통일

우리정부는 제2차대전과 「히틀러」정권이 감행한 국가적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독일국민에게 지워진 문제들의 종국적으로 구주의 평화적 질서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국민도 다른 모든 국민들 처럼 자결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Ⅱ. 명년부터 우리에게 부과될 현실적인 정책과제는 동·서독의 관계를 현재의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부터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통일을 유지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독일사람은 그들의 언어와 역사(그들의 영광과 불행으로 된)만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독일영토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국가와 구주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의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 수립된지 20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는 독일국민이 더 이상 갈라져 사는 것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결국은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단 독일에게만 유익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서 구주의 평화와 농서관계에도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민주공화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우리와 우리 우방국가의 입장은 결국 동백림당국의 태도자체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국제무역과 문화교류의 이득을 더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방정부는 1966년 12월에 채택한 정책을 그대로 계속할 것이며 독일민주공화국 각료회의에 대해서 상호 차별없는 한 정부간 협상을 다시 재의하는 바이며 이것은 계약상의 공동합의형식으로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독일민주공화국을 국제법상으로 승인할 의사는 없습니다. 비록 독일에 두개의 정부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상대가 외국이 아니며 그 관계는 다만 특수한 형태가 될뿐입니다.

전입자의 정책에 따라 연방정부는 상호 폭력의 사용 또는 폭력
에 의한 위협을 포기하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우리의 방침은 독
일민주공화국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승인합니다.

연방정부는 미국·영국 그리고 불란서에 대해서 우리가 백림사태
의 완화와 개선을 위해서 제기한 소련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
진해 줄 것을 권고할 것입니다. 4대국의 특별책임하에 놓여 있
는 백림시의 지위는 침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림의 생활안전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서백림시는
양독일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동·서독간의 교역이 다시 증대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난 1968년 12월 6일의 합의
에 따라 시작된 관제완화가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연
방정부는 그러한 친선교역관계가 계속 증대되기를 바라는 바입
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전독일문제성 (Bundesministerium für Ges-
amtdeutsche Fragen)을 그의 임부에 알맞도록 전독관계성 (Bundesmin-
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으로 개칭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독일정책은 하나의 관할권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정책은 우리정부의 꾸준한 과제이며 그 속에는 외교정책·안
전보장 및 구주정책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국민의 단결
과 분단된 지역간의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개혁

Ⅲ. 우리는 독일연방공화국내의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어차피 단행해야 할 개혁과 국민의 복지향상은 오직 경제발전과 건전한 재정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연방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려운 경제정책적인 유산을 물려 받았습니다.

즉 이제부터 「독일마크」의 대외가치가 8.5% 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세정책을 통해서 보장해 오던 대외무역은 마침내 지양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함으로써 동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 할 것입니다. 제 5차 연방의회의 위대한 개혁사업인 동법은 전체적인 경제적 균형이 위태롭게 될 때 삼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는 1969년초부터 등한시 되어 왔습니다.

지난 10월 24일의 연방정부결정은 우리의 국제수지면의 불안한 국면과 근본적 불균형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무역을 보다 자유화하고 국제통화제도를 안정하기 위해 대외무역면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국내경제면에서는 평가절상조치가 1970년도의 물가변동을 완화할 것입니다. 물론 전임자들이 적시에 조치를 취했다라면 보다 성과가 좋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연조치로 말미암아 커다란 물가변동이 우리에게 닥쳐
올 수도 있습니다.

○ 긴급한 계획

우리의 평가절상조치가 없었더라면 장차 경기후퇴의 위험을 내
포하고 있는 계속되는 경기의 침체화현상을 피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중단없는 안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를 위해서 우리는 경제정책적·재정적 긴급계획을 수립한 것입니
다.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상품공급을 점차 국내시장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는 재
정정책
2. 독일「말크」의 평가절상 이후 새로운 상황에 알맞은 금
융 및 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방은행과의 꾸준한 협의
3. 노동조합 및 경영자협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화있는
행동면에서 보다 강화하고 유지하며 여기에는 앞으로 농업대표자
들도 참여시키는 분제
4. 국가경기위원회를 통한 연방 및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의 협력의 강화
5. 구주공동시장회원국과 경제 및 재정정책을 더욱 조정하며
당면한 국제통화계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협
력등.....

독일「말크」의 평가절상은 우리에게 농민의 소득보상을 요구하

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시장에 관한 로마협정을 준수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구주공동시장의 사회는 독일농업이 입게 되는 소득면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의 논의끝에 동 이사회는 오늘 아침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가. 독일대표의 제안에 따라 6개월간의 과도기적 조정기간을 설치한다. 이 기간에는 지금까지의 환율에 준해서 가격을 유지시키며 관세보상제도를 보장한다.

나. 이 기간이 경과하면 농민은 소득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 이러한 보상은 일부 잉여가치세법을 수정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기타 세부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과 곧 상의하게 될 것입니다.

라. 나머지는 직접적인 보상지불금으로 메꾸게 되는데 여기에는 구주공동시장이 관여하게 된다.

마. 구주공동시장이사회는 같은 장기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다시 회합할 것이다.

○ 농업정책의 계속적 발전

우리 연방정부가 지금까지의 가격수준을 관세보상제도로써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그리고 강력히 재의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동 이사회는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주공동시장회원국과 위원들은 그렇게 되면 공동의 농업 정책과 구주공동시장의 근본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충이 명백히 보여주는 사실은 훨씬 발달된 농업시장구조와 경기 및 통화정책의 협조 결여사이에 하나의 모순이 개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공동시장의 범위 내에서 농업정책을 보다 발전시키려면 앞으로는 경제정책과 통화정책면의 발전에도 동일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이러한 농업구조정책을 위해 국가적 의무를 완수하는데에 있습니다. 농업의 구조개선이 아무리 필요불가결한 것일지라도 농산물가격을 저락시키는 정책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 농업지원

농산물공동시장이 너무 빨리 실현되었기 때문에 독일농업의 내부적인 적응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단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업이 그러한 시련을 극복하도록 지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농업도 전반적인 수입 및 복지향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날의 국민경제와 동일한 수준으로까지 발전되어야 합니다.

○ 국내외에서의 자유경쟁

이러한 긴급계획은 우리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모든 사람에게
제외하는 연방정부의 밝은 사업입니다. 꾸준한 경제발전은 사회를
전진시키는 가장 좋은 밑바탕입니다. 그것은 또한 개개인의 자
발의식과 투기성과 그리고 능력을 개발해 주는 풍토를 조성하여
줍니다. 경제발전은 직장을 보장하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한 과잉소비로 부터 증가하는 수입과 성장하는 저축을 확보하
여 줍니다.

능률적인 시장경제질서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만 안정과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의 활발한 경쟁이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외에서의 보호무역주의자적 노력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자유경쟁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계법을 실현화할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기업집중이 필요불가결하지만 이것이 능률적
인 기업경쟁을 저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예방하는
통합조정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경제의 전문분야에 적용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된 독점규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주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상황을 좌우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악용을 방지
하도록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간에 그리고 수공업과 상업간의 효율적인 협조관계
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소(小)「칼텐」을
금지함으로써 좌초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경쟁을 위한 특

같은 시발점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차별적인 법시행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합조정은 언론출판에도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연방정부는 언론출판법의 기본법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새로운 기술적인 방법을 응용함으로써 사회의 가장 유익한 면, 특히 교양문제에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일반국민의 흥미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칼렌」법을 수정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발전적인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자금공급을 용이하게 하고 협의기구를 설치하며, 생업에 얽매이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양노보험등 관계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정부의 경제 및 사회정책은 뚜렷한 자본정책을 설정하는 노력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회계층 특히 노동자층에서의 재산축적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이것을 강력히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재산축적법을 제정하기 위한 초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첫 조치로서 활발한 자본재산형성에 대한 금부의 특혜한도를 312 「말크」에서 624 「말크」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노동조합과 경영자협회가 이 제의를 받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축적은 경제적 자본형성과 주식투자를 동시에 용이하게 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강제저축은 우리의 자유로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개인기업의 저축은 전반적인 저축축진과 보조를 같이 해야 하며, 건설저축의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저축축진의 당면개혁과 관련된 기타 여러가지 자본정책적인 법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축자들을 더욱 보호하고 주식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중요한 부수적인 조치들입니다.

발전된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안정이란 오직 개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70년대에 가서 더욱 명백해질 것입니다.

부단한 경제적·사회적 변화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자발성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자적 자발적의식은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재능이 위축되는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망한 인간들이 그저 자기의 운명에만 의지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70년대의 독일의 경제적 장래에 책임을 의식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키우고 강화하고 또 연구하고 개혁해 가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기에서는 특히 아직도 존재하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적 차이를 없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써 우리 사회의 상당한 잠재능력과 각 개인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IV. 우리 재정정책의 원칙은 연대책임입니다. 현 사정은 기민당이 제시한 것 보다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정부는 무엇보다도 1969 ~ 1973 년의 중기재정계획과 — 가능한 한 조속히 — 1970 년도 연방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신예산안은 우리들의 정치적 의도를 숫자로서 표시할 것입니다. 이 예산안에서는 과거 중기재정계획제출시에 원하지 않았던 것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전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1. 과거의 예산안은 1968 년부터 1972 년까지 해당되는바 기민당정권이 처리한 허다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신정부는 제 5 차 독일연방의회의 많은 정치적 주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적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3. 1969 년도 예산중에서 농업정책부문에는 34 억 DM이 제상되어 있고, 1970 년도는 불과 27 억 DM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림성이 제출한 이 안은 절대로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차 FFC 시장 질서를 위한 지출을 분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만 이는 1970 년도에는 이제까지 보다도 더 많은 14 억 DM이 될 것입니다.

4. 「탈 크」 평가절상의 지연으로 인하여 정부재정에는 특별한 부담이 야기되었습니다. 즉 공농부문에서의 추가적 급부와 금준보 다 고가로 평가될 농업부분의 청산조치입니다.

지난번 국회회기에 공포한 세계개혁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법치국가형성을 위한 헌법정신을 실현합니다. 현재의 개인재산 압류를 꾀하는 세제로서 개인재산권을 침해할 의사는 없습니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폭 넓은 재산축적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조세부담률 불변

우선 우리는 세계개혁위원회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공평하고 단순하며 개관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조세제도안 제출은 시급히 행해져야 합니다.

합리적 관리와 현대적인 비용절약방법을 이용함으로써 1969년도의 조세부담률을 올리지 않고서도 예산은 명년도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개혁위원회의 작업에 선수를 쓸 필요도 없이 두가지의 개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첫째 1964년 이래 연수입 2,400DM인 면세점을 1970년 1월 1일부터는 2배가(二倍加)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제도에서 하나의 필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과세의 최하수입한계선도 1970년 1월 1일부터는 중위(中位)소득자를 위하여 2배가(加)될 것입니다. 그리고 1970년 12월 30일부터 소득부가세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 세제는 1966년의 개정위기 이래 도입되었습니다.

신정부는 재정개혁을 완성할 것이며 이 개혁은 실천적 재정정책

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주장하려는 것은 재정계획위원회의 협동입니다. 이 위원회는 각급 지방정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조기관입니다. 이 방면에 있어서도 연방의회와 더불어 성과있는 협동이 되리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V. 신정부는 개혁을 논한다면 정부기구제도 자체부터 시작해야겠읍니다.

성(省)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전문관할에 관한 정지작업은 착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고 이중 작업을 피하기 위하여 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수상실 및 제 성은 그 기구면에서 또 그 업무면에 있어서 현대화될 것입니다. 신설된 내각위원회의 각 업무에 해당되는 권한과 협동에 관한 윤곽이 연방의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장차 1개의 성에 의하여 통합될 체신성과 교통성을 위하여 흡어진 권한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편업무 및 전신·전화업무는 상(相)의 감독이 정치적인 것으로만 제한된다면 우리 사회를 위하여 더욱 잘 수행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연방우편의 특성은 강화되고 경제적인 기업관리는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정부는 연방우편을 위한 신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들 위한 준비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며 이 개정은 또한 체신종업원의 권리와 체신이용자의 이해문제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난민성은 내무성에 흡수됩니다. 신정부는 추방민·피난민 및 전상자에 대한 책임을 종전과 같이 집니다. 신정부는 이익 통합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입니다.

망실 재산보상·전상자구호법제정은 농독으로부터 오 피난민을 위해서도 공정한 종결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등독의 문화적 업적과 가치를 보전하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현명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정부는 이번 국회회기중에 한 특별위원회를 창설하려는데 이 회에는 각급 지방정부 및 자치단체·공무원 및 과학자들이 속할 것입니다. 이 총회는 지방정부 구조의 발전에 관한 제 제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지방행정구역개편은 법률 29 호에 따라 제의되는 지시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 집니다. 행정개혁과 공무원법 개정률 위하여는 제(諸) 제의를 참고할 것입니다.

○ 공무에 있어서의 능률본위 원칙

행정개혁과 시민봉사개혁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진제도개혁은 능률본위원칙이 앞세워져야 하며 인사판리는 신속성이 있고 인사조치는 투명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신정부는 공무원들이 일반적 경제발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정부는 범죄방지를 위한 현대화와 강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신정부는 이에 대한 긴급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이 안을 1970년에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Ⅳ. 신정부는 대통령이 위원장의 자격으로 시작한 법률개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지난번 연방의회에서 의결한 개혁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계 정당을 망라한 대다수위원 찬성을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적·기술적 및 사회적 사정에 적응하는 필요한 법률규정입니다. 공업시대의 우리 인간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며 경제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및 인간적 법질서와 생활질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 혼인법의 개정

우리는 무엇보다도 권리를 찾는 국민을 위하여 우리의 난산된 법률을 선명하게 하렵니다. 행정과 재정의 정당성에 관한 권한은 법무상에게 이관됩니다. 보통재판권은 3 단계로 구성될 것입니다.

시민에게는 선량하고도 신속한 재판제도가 부여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 재판관들의 수가 그들에게 부여되는 업무량에 맞게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법관들의 양성과 재교육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의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각자 업무에서 협조정신을 배양하고 헌법에 규정된 그들의 지위에 맞도록 봉급을 지급하며 법원에는 현대기술의 도입을 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판사에게는 다수의견과 다른 자기의 투표를 공표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법에 있어서는 혼인법의 개정이 긴급합니다. 신정부는 설치된 위원회의 제의를 기반으로 한 개정안을 명년에 제출하겠습니다. 세계관적 의견의 차이가 구제될 수 없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인간의

고난을 제거하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혼의 경우에 부인과 어린이들이 방해자가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회기간중에는 형법개정이 완료되어야 겠으며 이는 형법 개혁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형법개정법의 제정에 의하여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형법전의 신첨가조항(添加條項)을 적기에 제출함으로써 이미 제정된 법률과 함께 1973년 10월 1일에 발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Ⅱ. 우리 군대는 많은 요소와 기능면에서 능률의 한계선까지 발전이 요구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계군인과 징집에 의한 일반군인 및 군인의 교육과 장비등 모든 것이 반드시 임무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 우리 군인들의 실제적인 체험은 오늘날 우리 국방군의 광범한 변영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변영요소는 지체없이 도입될 것입니다.

군인·과학 및 연방정부는 다 같이 협동할 것입니다. 1970년도 국방백서는 이 총체적 검토의 결과와 목적했던바의 개정률 연방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국방군을 통합한다.

우리는 국방군을 우리 사회의 통합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본인은 정부의견을 4개점에서 확실히 해명코자 합니다.

1. 우리는 국방의무를 지 자들을 동등한 취급에 의하여 최대의

공정을 실현하렵니다. 병역의 예외조치와 병역면제는 정리될 것입니다.

2. 국방부내의 중견참모들에게는 국제관계적 군복무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규정은 관료적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기술과 관리는 현대산업관리의 방법에 의하여 합리화됩니다.

3. 우리는 적합한 교육자·부대지도관 및 전문가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부대를 돌보는 것이 우리 노력의 중심이 됩니다.

4. 우리는 또한 연방의회 국방분과위원회의 성과있는 노고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각급 각 직책의 모든 장병이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내부지휘의 계 원칙을 우리는 고수할 것입니다. 개개의 규칙의 발전과 경험에 대한 적응이 확고한 법률상 및 도덕상 표준의 기반상에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양심상의 이유로서 전쟁행위거부의 권리를 확고히 인정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취급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이 조치는 관료화되어서는 안됩니다. 군인과 군기관요원의 업적은 일반대중의 인정에 의해서만 효과적입니다.

Ⅲ.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학문과 연구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개혁의 첫 순서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한 분교성(교육과 과학)을 한군데로 모아 놓았습니다.

교육과 학문의 과업은 오직 각급 지방정부 및 단체와 더불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연방의회와 동감하는 바입니다.

제 5 대 독일연방의회는 제 지방단체의 협동을 위한 수다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많은 가능성을 신정부는 모두 실현할 것입니다. 신정부는 각 주를 — 그들의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 도울 것입니다.

전 교육제도의 심한 혼란은 오늘날까지도 이룩하지 못한 우리 교육제도의 4 개부분 — 중학교·대학·직업교육·성인교육 — 을 투시할 수 있고 합리적인 구상에 따라 병행시킬 수 없었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전체적 계획이 없는 한 인간과 수단은 그 이상적 효과를 이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신정부는 법률제외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와 더불어 교육제도를 위한 확실한 헌법적인 원칙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긴급한 것은 차후 15년 내지 20년의 장기계획입니다. 연방의회와 지방정부의회에 제출될 등 계획은 이 계획의 실현방법을 동시에 설명할 것입니다. 동시에 5년 내지 15년간의 국민교육비에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전체국민교육계획

신정부는 그 가능한 한도내에서 전체국민교육계획을 내세우는데

힘쓸 것입니다.

그 목적은 상설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존재의 조건을 인식하고 그에 부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비판적이며 판단능력이 있는 시민교육입니다.

이 국민의 학교가 비로소 학교입니다. 우리는 10학년이 필요하며 우리는 우리사회에서 18세까지 각 방면의 교육을 받은 가급적 많은 사람을 요구합니다. 교육정책을 위한 재정적 수단은 그에 상응하게 증가되어야 합니다.

신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헌법의 중심과제를 아직 조금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은 절정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공헌해야 합니다.

신정부의 과제의 하나는 대학교무법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동법은 또한 전체 제도내에서의 현 전문대학의 상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적 구성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대학과 국립연구기관을 위해서는 퇴폐적이고 교계(敎階)적인 제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효있는 제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방연합체가 특히 이에 해당되는바 적합한 조치가 촉구되는 바입니다.

대학건설은 일층 가속 추진 되어야겠습니다. 대학능력의 단기적 확대를 위해서는 12내지 15개월 간에 건축방법의 합리화에 의하여 완성될 수 있는 대학건축을 위한 최대의 수단이 마련 되어야겠습니다.

신정부는 지방정부가 전문적 부문에서 정원제 폐지를 하므로써 어

떻게 구체될 것인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급한것은 교수기술과 통선교육의 이용일 것입니다.

대 학개편은 우리가 하려는 일반교육제 개혁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교육정책은 학업의 단계에만 따라서 고안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고안되어서도 안됩니다. 기술교육, 교육 및 연구는 전체제도로써 이해되어야 하며 이 제도는 동시에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 가능한 한 고도의 전문가를 사회가 요구하는것 또 연구결과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기술교육과 연구의 근본적 개혁은 동시에 우리나라의 장차 경제적 경쟁력의 조건입니다.

근래에는 과학기술의 불비, 연구의 여러 카테고리중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기와 같은 나라는 금일에서도 전문분야에 있어서 근본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또 해야합니다. 연구와 제한된 재력때문에 필요불가결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요구의 중점적 선택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신정부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오늘날 아직 시작을 못한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컴퓨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보처리작업은 방대한 것이며 이 작업은 계산기 발전보다도 많은 수단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연구계획이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지역에 대한 모든 국제적, 특히 구라파의 문업을 촉진케 할 것입니다.

구라파에는 과학자들이 그들의 힘을 합칠것 같으면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의 과학자들의 능력에 뒤지지 않도록 이용하는 과학자들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K. 연방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정책을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연방문화재성 해체와 유럽부흥계획 (E R P) 자산의 연방재무성으로의 이관을 통하여 지방적 부문적 기업확장 정책과 구조정책의 조치가 잘 병립될 수 있고 강화될 것입니다. 구조정책은 쉽게 가능케 됩니다.

베르린과 경제지역의 우선권 유지하에서 주지역 능력의 강화는 구조정책의 요점으로 됩니다.

발전능력이 있는 공업입지에 대한 집중적 정책은 최고 효율을 보증하게 합니다. 그와 더불어 지방적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과제는 새로운 형식의 연방과 각 주의 공동작업에 까지 연장케 합니다. 구조정책의 큰 과제는 우리 농업을 현대화 하는 데 있습니다.

산업경제는 계속적인 동력과 원료의 엄가공급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석탄광업의 회복, 석유생산보장, 및 새로운 시장의 개설과 전략산업에 있어서의 경쟁개선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불경기에 대비한 대책으로서 생활필수품인 수입품의 충분한 저장을 필요로 합니다.

주위 환경과 생활사정은 70년대에 있어서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공간 계획, 도시 건설, 및 주택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선견지명의 사전 개혁이 언제나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첫 단계로서 도시건설촉진법이 곧 의결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혁의 실질적 집행을 가능케 하고 또 이 계획은 토지투기를 방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재산의 폭넓은 분배를 장려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토지소유를 유지케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입니다.

○주택건설 장기계획

우리는 주와 더불어 대중주택건설장기계획을 수립 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수요에 대응 할 것입니다.

이 과업 이외에 주택자금법개정도 동시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연방공화국의 공간적 발전을 위한 목표대상은 연방의 공간계획내에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조정책, 지방경제촉진, 및 도시건설과 주택건설방안은 상기 목표대상에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기적인 중요한 도시건설을 위한 구상을 발전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연방정부는 이것을 제2차도시건설보고에서 구체화 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자연, 휴양지, 동물등의 보호에 더욱 유의하여야만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의 개선은 유능한 교통체제를 필요로 합니다. 강조하건대 연방정부는 전 회기기간에 준비한 개정안을 속행할 것입니다. 현대 교통정책은 교통과학이 이제까지 이끌어

은 것 이상의 광범한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연방정부는 열망하는 자유로운 교통 경제를 강화코저 하는 전제로서 교통 각 부문에 대한 동등한 경쟁조건을 마련하게 할 것입니다.

독일 연방철도는 지난 몇년동안에 다행히도 미래의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연방철도의 기구와 행정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방철도는 기업경영에 맞게 현대기업원칙에 따라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방철도 소유자인 연방은 전후 재건에 의해서 질머진 부채를 이제 청산할 수 있는 시기에 다달은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각 교통부문간의 협동을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고속도로와 연방도로망은 1971년부터 1985년 까지의 계획의 일부로서 5개년 계획으로 강대하게 건설 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970년에는 새로운 육상교통 질서의 계획이 마련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중부구라파의 현존 고속교통제도에 부응하기 위해 시속 200 km 이상의 고속교통 체제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사회법전의 확대

X. 사회적 법치국가란 연방정부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이 헌법의 위임사항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이미 전망하기 어렵게 된 노동법을

하나의 노동법전(法典)으로서 집약시킬 것입니다. 이 작업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하나의 사회법전(法典)으로써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능률의 보다 밝은 전망을 위해, 사회예산을, 사회적, 경제적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기본요소로서 재편성할 것입니다.

제5차 입법기간 중에 상정된 입법안 등을 기초로 하여, 경영법과 고용원대표법의 개정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고용원대표법의 개정범위내에서, 고용원대표단의 경영참여권의 물적, 형식적 확대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현행법에서 그 권한을 보장 받고 있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도 거기에 대한 참여권을 고용원협의회가 갖도록 고려할 것입니다. 지난 입법기간 중 제출된 노사공동결정위원회에 관한 보고는 이를 검토하고 심의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용원의 의사가 공동책임과 공동결정에 보다 광범위하게 기여할 수 있는 민주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도로 기술화되고 자동화된 사회에서 야기되는, 신체건강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학술연구를 통하여

국민위생법으로써

보건진료소 설치와

위생사상의 계몽을 통하여

조화되고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사회의학(社會醫學)연구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 연구소의 초기목적은 광범위하게 구상된 예방검진(預防檢診)과 현대의

대질병(大疾病)의 조기진단에 관한 빈틈없는 기틀을 마련할 것임
니다.

암 연구와 예방에 관하여도 정부는 이를 중요시하고 시책에 반
영시킬 것입니다.

대기오염과 음료주오염과 소음에 대한 방지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입법화 할 것입니다.

병환자에게 건강의 회복과 활동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0년도에 의사의 재교육과 시설의 현
대화로 수용태세가 완비된 유능한 병원에게 경제적 보장을 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제규정은 1970년
봄에 이미 의결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선택

자유로운 의사선택과 자유로운 의료행위라는 원칙은 바로 연방정부의 선
념인 것입니다.

정부는 발달된 구라과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와 보조를 맞추어,
의약품(醫藥物)은 국가와 제조측의 공동책임아래 이를 취급토록
하고, 최대한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일련의 식료
법(食料法)개정에 관하여서는 1970년에 광범위한 입법안이 제출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선정과 가격표기의
진실성과 명백성이 중점적으로 다루워 질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의 자녀수당(手當), 면세혜택, 그리고 다른 물질적
인 원조는 상호간의 조화를 잃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장학제도의

계속적인 개선과 관련시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직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불충분한 원조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수당의 인상에 관하여는 1970년에 가서 결정을 분계될 것입니다.

사회정책적 개혁과 민주적 공업국가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람직하며 필요한 것입니다. 부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서둘러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정치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부인들의 동등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하여 더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정개혁

XI. 정부는 70년대 초에 해당하는 내년에, 이 성명의 보충으로서, 우리나라의 내정개혁분야에 관한 계획안과 정부의 의도를 분야별 보고로서 국회와 일반국민에게 개진(開陳)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1970년 1월에 국가정세에 관한 보고를 발표할 것이며, 2월에는 연간(年間) 경제보고를 토의사항우분 제출할 것입니다.

3월에는 농업실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될 것이며, 4월에는 사회문제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5월에는 정부의 문교정책, 6월에는 국방백서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휴회(休會)가 끝나면, 교통정책과 보건정책, 공기정리와 도시 계획, 그리고 자력(資力)형성과 세계개혁이라는 순서로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국회와 일반국민은 70년대 초에 정부의 광범위한 개혁정책의 전모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평화만이 우리들의 세계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며, 안전선에 서서 평화는 비로소 널리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생각은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꼭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방정부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가 갖는 책임을 의식하고, 우리의 분수에 합당한 최선의 힘으로써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다 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각하의 의사를 받들어 우리들이 갖는 제한된 수의 힘을 인식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독자성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평화추구를 위한 조성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전쟁과 위기로 말미암아 고난에 처한 세계의 구제를 위하여 우리가 맡은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협조를 강화하고, 국민간의 이해를 촉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에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국제적 협조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각 국민간의 문화교류일 것입니다. 외국에서의 독일문화소개는 외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지난날

의 빛나는 업적 이외에도, 과도기에 처한 현재에 있어서 독일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적 작업과 결실을 위한 진통의 내용을 소개한다는 것에 장차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연방정부는 "파아트너"의 정신으로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세아의 제국과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후진국원조년도 20년 초에 성명을 낸바 있습니다. 즉 우리는 후진국원조 부담에 대한 공동계획에 참여할 것이며, "피어슨"위원회 보고에서 표명된 제안을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방정부는 후진국원조의 공적인 의무수행을 위하여 년 11%의 인상액을 규정 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공적자본 원조자금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을 전적으로 후진국원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할 것입니다.

후진국원조전문가와 종사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70년도 후반기까지는 현재보다 배가(倍加)된 숫자로서 총당할 것입니다. 정부는 독일원조의 질적 향상을 계속 추진시킬 것이며, 이를 위하여 후진국원조의 기획과 실시의 양면에서 그 간소화와 진척을 꾀할 것입니다.

제3세계와의 협조는 국가만의 관심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후진국의 후진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사설단체의 참여도 이를 적극 후원할 것을 다짐하여 두는 바입니다.

세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으로 확립된 나라들로 부터 자유롭고, 모든 국가의 통상을 장려할 수 있는 외교경제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정책을 통하여, 그리고 세계적인 통상에 참여하는 각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와 마찬가지로 후진국측의 통상도 우리들은 뒷바침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후진국들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일관적인 우선권을 말해두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정부의 외교정책은 1966년의 평화각서와 1966년 12월의 정부성명과 결부되어 있고, 이 문서에 표명된 정책은 그 당시 의회각과의 찬성을 얻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지속적인 구현을 노력할 의사인 만큼 재론을 피하겠습니다.

연방정부는 국제연합과, 다른 국제적 기구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각오입니다. 이와같은 정부의 태도는 그 의의가 점점 증가되어 가는 군축과 군비제한 협정에 대하여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특히 내가 1968년 9월 3일 외상으로로서 참가한 제네바의 비핵무기국가회의에서 표명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화를 위한 우리의 공동작업에 참여하는 어떠한 국가와도 우리는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통상관계를 강화한다는, 연방정부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안보상 필요

연방정부는 현대에 있어서 각 국민간의 평화적공존을 다시 파괴하는 어떠한 형식의 차별과, 압박과, 외국지배일지라도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바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갖가지 시련을 이겨 온 북대서양

에서 양동맹은 장차에 있어서도 우리의 안보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 동맹의 더욱 굳은 단결은 구라파대륙의 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정책에서 두가지의 측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시적이며 동가적(同衡的)인 준비제한과 준비감시이며, 우리는 이를 위하여 진지하고도 꾸준한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방정부에게 충분한 국방태세를 갖추게 하는 보장인 것입니다. 이 두가지 시점에서 모두 연방정부는 그의 안보정책을 세력균형과 평화보장의 정책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두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우리국가의 외부적 안전보장은 동맹의 한 기능이며, 이 기능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기능의 일부로서 우리는 동서 양 세력의 힘의 균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안보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의 기여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안보를 위하여 벗과 동맹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정치적 안정의 상호이해 없이는 동맹도 안보도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맹내에서 또는 동맹 상호간에서 이때까지와 변함없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우리를 동맹국들도 역시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고, 이로서 그들이 공동의 안보정책과 일치된 안보노력에 이바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일 서방측 동맹이 이 점에서 소극적이면, 우리의 기여하는 노력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방군대는 그 훈련과

필계상 으로나 또는 장비에 있어서 공격전략에는 합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그러나 그의 국방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는
방위원칙은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조약과 구라파에 대한 확고한 방침에 따라, 연방공화국과
서백임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의 미국과 연방공화국
과의 긴밀한 관계는 연방정부로 하여금 이 사실에 대하여, 조금
이라도 회의를 갖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공동
의 이해관계는 더 이상의 보장과 성명의 반복을 불필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독일정책에서 적극적인 협조자로서 충
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구라파에 있어서의 군사적 감축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할 것이며, 동서 양 진영의 동시적이고 완비
된 무장제한과 군대축소를 위하여 추력할 것입니다.

구라파 안보에 기여할 회의의 주체로서 연방정부는 1969년 9
월 12일 "헬싱키에서 교부한 각서에서 취한 입장을 강화할 것입니
다. 이러한 종류의 회의는 심중한 준비단계를 거치면, 소규모의 군
비로서 보다 확실한 안전보장과, 양 진영간의 보다 큰 문제진전의
길을 트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긴장조정의 근원지로서 가장 큰 불안의 대상이 되는 것
은 근동에 있어서의 분쟁일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생각으로는
1967년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안된 해결방법에 따라
의 분쟁의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은 오로지 당해국민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여러나라와 우

호관계를 맺을 것을 원하는 바이며, 분쟁지역에 어떠한 무기도 공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특히 재앙의 당사자인 국민들과 더불어 월남전쟁이 참여제국의 동의에 입각한 정치적 해결로서 조속히 종결을 볼 수 있도록 원하는 바이며, 연방정부로서는 파괴된 이 양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원조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여기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XII. "덴 하그"에서 있을 6개국회의는 특별한 의의를 내포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구라파가 그 내면적 발전과, 공동사회로서의 충실과 확장이라는, 객관적으로 상호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과감한 진전을 보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고비에 빠지고 말 것이나 하는 것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구라파의 여러 국민들은 정치가들이 성과만 올리려는 마음보다는 역사적 논리에 순종해 주도록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독일과 불란서의 협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오늘날 구라파 여러 당사국 사이에서 수립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변함없는 관계를 이 조약체결에서 보여 줄 작오입니다.

구라파 공동시장의 확대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며, 이 구라파 공동시장은 영국과 기타 참여를 원하는 나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라파가 손해를 자초하지 않기 위하여, 구라파의 협

조과정에 영국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 정치의 지배적 세력들이 계속 구라파에 있어서 필요하리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고 기뻐하여 왔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구라파 공동시장이 보다 넓은 기반 위에서 발전하기 위하여 어렵고 또 먼 길에 들어서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소련과의 화해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구라파 공동시장이 이에 가입할 수 없고, 혹은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구라파 제국과 함께 경제적 협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도록 영향력을 미치게 할 생각입니다.

연방정부는 구라파 제국간의 긴밀한 정치적 협조를 구현시켜, 공동보조를 취하므로써 세계정치문제에 있어서의 단계적인 협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태리" 정부와 "베네룩스" 3국과도 이미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국가적 이해관계는 우리들로 하여금 동서 양 진영의 중간지점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방측과는 협조와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하며, 동방측과는 상호이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국민은 소련과 모든 동구라파 제국과의 평화도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이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할 각오이며, 이로서 한때 범죄적 도당들이 구라파에 초래 했던 것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 우리는 환상적인 희망에 사로잡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해 관계의 세력균형과 사회체제의 차이는 변증법적인 지양도 아니며
또 그러한 것으로 모호하게 처리되어서도 안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협상상대는 다음의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일민족도 유엔헌장에 명기되어 있는 민족자결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결권에 대한 권리와 의지는 어떠한 협상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환상의 제거

우리들은 화해작업이 쉽게 빨리 성취 되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며 이 과정을 시작할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선임자들의 정책을 계속 지키면서 폭력사용과, 폭력을
통한 협박의 상호적인 포기불 골자로 하는 협정체결에 노력할 것입
니다. 협정상대로서 내각 여기서 한번 더 되풀이 합니다만
동독도 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오해없기를 바라면
서 말해 두겠습니다만, 우리의 직접적인 인방국인 "체코세" 대하여는,
과거로 소금하는 협정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정당사국의 영토종주권을 존중하는 폭력포기 정책은 연방정부의
움직일 수 없는 신념으로 구라파의 유화에 결정적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폭력포기는 문제해결의 계속적인 진전을 가능하게 하
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
하여 우리는 한쪽으로는 통상과 기술협조와, 문화교류라는 공동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여기서 발표한 범위를 넘어서는 어떠한 규정과 형식도, 우리가 원하는 협상에서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취하지 않을 것을 의식적으로 말해 두는 바입니다. 여기서의 진전은 오로지 바르샤바조약 제국의 정부들의 협조적인 태도에서만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 관 된 정 책

XV. 얼마 안가서 연방정부는 일련의 결정을 하여, 이때까지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의도를 실례로서 분명히 할 것입니다.

1. 연방정부는 "덴 하그"회의에서 구라파공동시장의 충실과 확장, 그리고 정치적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조치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정부는 독일의 공업능력을 우주탐구의 특수분야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해 온 미국에게 협조할 것입니다.

3.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이사회에서 임명된 근대사회문제연구위원회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4. 정부는 폭력포기를 주제로 한 소련의 작서에 대답할 것이며 소련의 제안인 모스크바 회담에 관하여, 그 협상시기를 제안할 것입니다.

5. 정부는 폴란드인민공화국과의 회담을 제안할 것이며, 이것은

1969년 5월 17일의 브라디스라브 고를카의 설명의 미안 대답이 될 것입니다.

6. 정부는 앞 정부의 결정에 따라, 아직 미결된 해명사항이 해결을 보게되면 원자무기불확장 조약에 서명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XV. 우리는 누구와도 맞장구 치지를 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국민과 국가와,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았은 시정을 본 연후에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민주주의적 참여없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성공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맹목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국민들이 갖는 권위에 대한 거드름과 장중한 무관심도 역시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람은 비판력을 갖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결정하고 공동으로 의무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올시다.

우리 정부가 갖는 자신은 관용으로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비판도 이를 연대책임의 발로라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 아니며, 선택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를 갈구할 것입니다.

지난날 이 나라에는 두번째 독일민주주의도 첫번째의 길을 밟게
되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과거에도 믿지 않았거니와 현재에도 더욱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막다른 위치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시작단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으
로나 밖으로나 모두 친량한 이웃으로서의 국민이 되코자 하는 것
입니다.